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6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 미지정시의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정함(안 별표11 제2호초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초.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 항제1호의3	700	1,400	2,0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6조 관련)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초. 법 제22조의8 제1항을 위반 하여 국내대리 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 제1호의3	700	1,400	2,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625